

제규정관리 규약

제정 2001. 7. 26
개정 2001. 12. 26
개정 2005. 10. 18
개정 2010. 12. 2
개정 2014. 2. 20
개정 2015. 8. 4
전부개정 2016.12.1
개정 2026. 2.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본회 제규정의 체계와 제규정의 제정·개폐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규정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규정”이라 함은 본회 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업무절차와 방법등의 기본에 관하여 내부결정으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규범으로서 규약·규정·예규를 말한다.
2. “외규”라 함은 본회 업무에 관하여 외부결정으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규범으로서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감독관청의 지침,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발한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
3. “제규정관리”라 함은 제규정의 입안, 제정·개폐, 심사, 등록, 시행, 제

규정집 편찬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제규정 관리의 주체 및 범위) ① 제규정의 입안·제정·개폐 및 시행은 당해 규정에 정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하 “주무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되, 제규정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관리부서장을 두며 준법감시인이 이를 담당한다.

② 제규정의 관리는 이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총괄관리부서장은 제규정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규약 및 제규정의 제정·개폐(안)의 심사·등록과 제규정집 발간
2. 주무담당부서장에 대한 제규정의 제정·개폐의 요구
3. 주무담당부서장에 대한 제규정관리 업무의 지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규정의 제정·개폐를 요구받은 주무담당부서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제규정의 체계

제5조(종류) 제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규약
2. 규정(규약시행규칙 및 「수협중앙회임직원행동강령」 포함)
3. 예규(요령·규칙·업무방법서)

제6조(규약) ① 정관 제85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회업무의 기본적 준칙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규약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조합감사위원회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에 관한 규약은 이사회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조합감사위원회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규정) ① 수협법·정관 또는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회장 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회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로 확정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 감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에 관한 규정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확정한다.

제8조(예규) ①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이를 예규로 정한다.

② 예규는 요령·규칙·업무방법서로 구분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소관직무를 수행하는 집행간부의 결재로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2. 10.>

1.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 감사업무에 관한 예규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결재
2.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예규 :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결재
3. 준법감시 업무에 관한 예규 : 준법감시인의 결재 <개정 2026. 2. 10.>

제9조(효력순위) ① 제규정의 효력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
2. 규정
3. 예규

- ② 제1항의 효력순위에 대하여 상위 제규정에 저촉되는 하위 제규정의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규약의 시행을 위한 규정은 규칙의 명칭을,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한 규정은 강령의 명칭을 가지되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동일순위 규정간에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의 조항이 종전의 제규정의 조항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이 그 효력에서 우선한다.
- ④ 제규정의 제정·개폐·시행 등 제규정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약 및 동 시행규칙이 다른 규약 및 규정에 우선한다.
- ⑤ 외규의 효력은 제규정에 우선한다.

제3장 입안·심사·등록·시행 등

제10조(입안) ① 주무담당부서장이 제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제규정(안)을 작성하되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규정을 입안한 주무담당부서장은 총괄관리부서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사) ① 총괄관리부서장은 제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규정 체계의 적부
2. 법령·정관 및 다른 제규정과의 저촉여부
3. 그 밖에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유무

② 총괄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규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입안한 주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구수

정 등은 협의없이 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부서장은 제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입안한 주무담당부서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제12조(통보 및 시행) ① 제규정을 입안한 주무담당부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제규정을 EKP 전자문서로 총괄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회장·대표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 시행된 제규정의 원안은 입안한 주무담당부서장이 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효력발생) 제규정은 회의체의 제정·개폐에 관한 의결 또는 제정·개폐권자의 결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규정의 부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회원조합 제규정예등) ① 주무담당부서장은 회원조합을 지도하기 위한 모범규정으로서 회원조합 자체 규정을 제정·개폐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제규정(예)를 정하여 시행 또는 예시·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는 회원조합이 자율적으로 제규정을 채택·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범안으로 예시·통보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제규정(예) 또는 모범안의 제정·개폐권자는 대표이사로 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 감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무담당부서장은 회원에 대한 제규정(예)를 입안할 경우 별도의 (예)를 정하되 본회 규약 및 규정과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규약 및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본회 예규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예)를 정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예규를 적용토록 한다.

④ 회원의 직제 및 인사제도에 관한 규약 및 규정 중 회원의 의견을 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제88조에 따라 인력관리협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회원조합에 대하여 해당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규정(예) 또는 모범안의 입안·심사·등록·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주무담당부서장은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원조합의 업무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지도사항으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제규정집의 편찬 및 관리) ① 총괄관리부서장은 제정·개정된 제규정을 편집·발간하여 관련 부서 및 회원조합에 배부한다. 다만, 제규정을 전자데이터로 등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주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규정집을 독자적으로 발간·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본회 전 조직 단위의 장은 제규정집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관 관리자를 경질하는 경우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규정집이 대외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제규정의 해석) 제규정의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담당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주무담당부서장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총괄관리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규칙)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11.10 이사회결]

이 규약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2.10 이사회결]

이 규약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